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
- 나.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,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’를 추가로 신설 (안 제3조제9호, 제4조 관련 별표 1)
- 나.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8. 8. 2. ~ 8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”을 “위반행위를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(단,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)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

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

별표 1의 5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란 다음에 6.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6.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(변경)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(변경)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(제3조제9호)	200,000	
---	---------	--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서울특별 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<u>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위 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 나,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 급한다.</u>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 ----- ----- ----- --- <u>위반행위를</u>----- ----- ----- ----- . 단, 포상금 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(단,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 우 그 불복절차)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<u>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경영한 자</u>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, 관련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함.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,
-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,
- 안 제3조(포상금 지급대상)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수립(신고건수 파악 등)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렵고,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오하나 주무관(02-2133-2339)